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4. 12.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4. 7. 17, 김현정의원 등 11인

나. 회부일자 : 2024. 7. 18.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3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 9. 26.) 상정 · 제안설명 ·

검토보고 · 대체토론 · 소위원회

제1차 중소기업소위원회(2024. 11. 22.) 상정 · 심사 · 의결(원안가결)

제10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 11. 28.) 상정 · 소위심

사보고 · 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김현정의원)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로 변경하였는데, 아직 일제시대부터 사용하던 대차대조표 용어가 법률에 남아있어 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고자 함(안 제30조제2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유인규)

김현정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차대조표 용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려는 것임. 현행법은 지역신용보증재단으로 하여금 사업연도마다 결산보고서, 대차대조표 등을 작성하여 해당 연도가 지난 날부터 2개월 내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용어를 변경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긍정적인 것으로 보임.

첫째, 특정 시점의 재무상태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재무상태표라는 용어가 보다 직관적으로 그 의미를 알 수 있게 하는 점이 있음.

둘째, 「국가회계법」은 2009년 제정법 시행부터 대차대조표 대신 재정상태표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도 2009년부터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용어를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인세법」, 「소득세법」, 「공인회계사법」 등 다수의 법률에서 재무상태표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

셋째, 「수산업협동조합법」 제73조제1항, 「경찰공제회법」 제18조제3항, 「군인공제회법」 제17조제2항 등 유사 입법례에서도 재무상태표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음.

넷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Korean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일반기업회계기준 등에서 재무제표 구성서류로 대차대조표 대신 재무상태표 명칭을 사용하고 있음.

다섯째, 국회 법제실의 「알기 쉬운 법률용어」¹⁾ 및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²⁾에서 ‘대차대조표’를 정비 권고 용어에 포함하면서 순화용어로 ‘재무상태표’를 제시하고 있음.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그 용어를 정비할 경우 국민이 법률을 쉽게 읽고 정확하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1) 국회 법제실, “알기 쉬운 법률용어 2020”, p.31, 2020. 12.

2)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부록: 정비 권고 용어)”, p.19, 2023. 12.

4. 대체토론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 박성민 위원)

개정안은 현행법의 대차대조표 용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원안의결하였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내용

체계·자구심사를 거쳤음(원안의결).

※ 심사보고서 붙임서류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 호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0조(예산과 결산) ① (생 략)	제30조(예산과 결산) ① (현행과 같음)
②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결산 보고서, <u>대차대조표</u> , 손익계산 서 및 기본재산계산서를 작성 하여 해당 연도가 지난 날부터 2개월 내에 시·도지사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② ----- ----- <u>재무상태표</u> ----- ----- ----- ----- -----.